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국회·경제부·사회부 담당
발 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날 짜 2020. 7. 14. (총 2쪽)

보도자료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미래통합당, 임대차3법 부작용 내세우며 법 개정 가로막아서는 안 돼
국토위.법사위, 임대차3법 관련 다수 법안 종합적으로 논의해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돼

일시·장소 : 2020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 속도를 내야 함.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임. 현 국회에 발의된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2+2), 6년(3+3, 2+2+2), 9년(3+3+3),

기한을 정하지 않는 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10년 이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함.

-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여야 모두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임대차3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즉각 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0. 7. 14. 화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정상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은평주거복지센터장

이강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1. 기자회견문

▣ 별첨1. 기자회견문

7.10 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입장

7월 국회,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치솟는 집값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야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주(10일),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단기 매매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강화를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3법' 도입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임대차3법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여당에서도 임대차 3법의 7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한바 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세금 증가가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3법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 세입자를 위한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는 길이다.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유의식은 84.1%로 높게 나왔다. 그런데 주택을 보유하고자하는 이유로 89.7%가 '주거안정'을 꼽았다. '자산증식'이나 '노후생활자금'은 각각 7.1%와 3.3%에 불과했다. 즉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식은,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정책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집을 사지(buy) 않아도, 살 수(live)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이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1회의 갱신으로 4년을 보장하는 안과 6년, 9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보장하는 안이 올라와 있으며, 임대료인상률도 5% 이내로 하는 안 뿐 만아니라,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30년 만에 개정될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향후 수십 년간의 세입자 주거 안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를 부동산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민 주거 안정'일 것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 여부를 떠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인상률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의 주택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7월 13일 현재 103개 단체)

